

#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8.

발의자 : 박홍근 · 안호영 · 임종성

황희 · 윤관석 · 이후삼

이규희 · 강훈식 · 윤호중

김철민 · 김영진 · 송갑석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· 고시, 종합기본계획 결정 · 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최근 부지반환, 토양정화,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.

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 ·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를 조정 · 결정 · 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 · 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##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무총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이”를 “국무총리가”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 
제8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이”를 “국무총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무총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에 따른 결정 · 처분 · 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<u>기획재정부차관</u> 중 <u>기획재정부장관</u>이 지명하는 자, <u>국방부차관</u>, <u>행정안전부차관</u>, <u>문화체육관광부차관</u> 중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이 지명하는 자, <u>환경부차관</u>, <u>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</u> 중 <u>국무조정실장</u>이 지명하는 자 및 <u>서울특별시부시장</u> 중 <u>서울특별시장</u>이 지명하는 자</p> <p>2. 역사 · 문화 · 도시계획 · 토지 이용 · 건축 · 환경 · 교통 ·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<u>국토교통부장관</u>이 위촉하는 자</p>	<p>제7조(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</p> <p>1. <u>기획재정부장관</u>, <u>국방부장관</u>, <u>행정안전부장관</u>,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, <u>환경부장관</u>, <u>국토교통부장관</u>, <u>국무조정실장</u> 및 <u>서울특별시장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-----</p>

<p>⑤ · ⑥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장) ① 위원장 1명은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 되고,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국토교통부장관인</u>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장) ① ----- <u>국무총리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국무총리</u>----- ----- -----.</p>
---	--